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나27620 판결 [구상금 등 청구]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나2762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9 선고 2017가단514061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강대희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정한익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9. 선고 2017가단5140612 판결

변론종결 2018. 12. 6.

판결선고 2019. 1.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A과 피고 사이에 2016. 7.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7. 5. 접수 제668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와 함께, 제1심 공동피고 A, B을 상대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여신거래약정,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 1) 원고는 2004. 10. 6.경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5,950만 원으로, 신용보증기간을 2004. 10. 6.부터 2005. 10. 5.까지로 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A은 2004. 10. 7.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여신한도금액을 7,000만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돈을 대출받았다.
- 2) 이후 A은 E은행과 사이에 여신거래만료일을 연장하는 등으로 위 여신거래약정을 계속 갱신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2015. 12. 15. 여신한도금액을 5,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6. 6. 14.로 연장하였으며, 2016.6. 15. 다시 여신한도금액을 4,8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7. 6. 13.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각 갱신하였다. 또한, A은 원고와 사이에 위 신용보증계약 역시 계속 갱신하여 왔는데, 2015. 12. 15. 보증한도를 4,000만 원, 2016. 6. 14. 보증한도를 3,840만 원으로 변경하여 갱신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보증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A이 2016. 6. 15. E은행과 여신한도금액을 4,800만 원으로 감액할 당시 이미 위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49,954,785원의 대출 잔액이 존재하였고, 2016. 9.30.경부터 대출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2017. 1. 20. 이후로 이자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자, E은행은 2017. 4. 14. 원고에게 '2017. 2. 14.자로 영업부진으로 인한 이자연체로 A의 신용부실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7. 6. 27. E은행에 A의 채무 37,718,90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A에 대하여 대지급금 432,246원, 미수 위약금 28,820원이 발생하였다. 2016. 2. 1.부터 원고가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이에 원고는 A, B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위 금액 합계 38,179,97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구상금 채권이 있다.

다. A의 근저당권 설정

A은 2016.7. 4.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7. 5. 접수 제66850호로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의 채무초과

1) 적극재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억 3,500만 원으로, 이는 A의 유일한 재산이다. 한편, B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3억 6,9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A은 이에 대한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면서 2016. 3. 25. 2억 5,090만원, 2억 2,880만 원의 각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대출채무액은 1억 9,300만 원, 1억 7,600만 원으로 각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 있었다.

2) 소극재산

가)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국세인 부가가치세 15,867,770원, 남양주시에 지방소득세와 그 가산세 등 3,408,220원을 체납하거나 미납부한 상태였고, 2014. 9.부터 2016. 6.까지 고지된 국민연금보험료와 그 연체금 합계 1,215만 원, 위 기간에 고지된 고용보험료와 그 연체금 합계 648여만 원, 2015. 1.부터 2016. 6.까지 고지된 고용보험료와 그 연체금 합계 648여만 원, 2015. 1.부터 2016. 6.까지 고지된 산재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359여만 원을 체납하거나 미납한 상태였다.

나) 또한,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E은행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4,900여만 원의 대출금채무가 잔존하고 있었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의 사정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위 각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6. 9. 21.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12. 28. 남양주시가, 2017. 1. 6.과 2017. 1. 11. 대한민국(처분청: 남양주세무서, 동대문세무서)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E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란 제2항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자신의 부친 D을 통하여 G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G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G의 A,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A, B의 채권자가 되었고, 위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와 A, B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G 사이에 실제로 피고 주장의 금전거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② 설사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을 제8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A과 B은 2015. 3. 13. G에게 64,941,000원을 수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015. 8. 31. 당시 G에 대한 위 채무원리금이 70,323,861원에 이르렀던 점, ③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전인 2016. 3.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가 이 사건 부동산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자 F, 채무자 B, 채권최고액이 2억 5,090만 원 내지 2억 2,880만 원으로 하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행순 판사 서경원 판사 주진오

별지